

인정(認定)특정비영리활동법인 (NPO 법인)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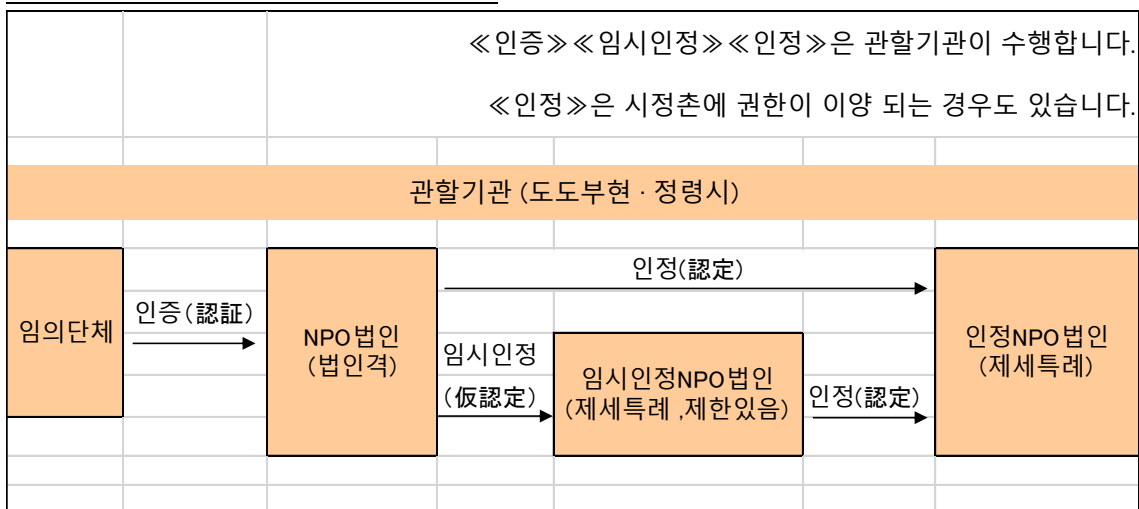
■ 제세특례정책으로 NPO 법인을 지원

인정 NPO 법인은, NPO 법인중에서 운영조직 및 사업활동이 적정하고, 공익의 증진에 기여가 큰 법인으로, 관할기관 (도도부현 · 정령시)으로부터 인정을받은 NPO 법인입니다.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 특례조치가 적용되어있습니다.

전에는 국세청이 심사기관 이었지만, 2012 년 4 월의 NPO 법 개정후, 인증과 같은 관할기관이 인정도 담당을 하게되었고, 따라서 인정기준이 완화되고 인정취득이 편리화 되었습니다.

인정 NPO 법인 설립 까지의 절차



※ 인정 NPO 법인은 다음의 8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합니다.

- ① 법인이 많은 시민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기부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② 활동의 기본이 공익(共益)적인 활동이 아니여야 합니다.
- ③ 조직 운영 등이 적정해야 합니다.
- ④ 사업 활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⑤ 정보 공개가 적정 해야 합니다.
- ⑥ 사업 보고서 등을 관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 ⑧ 설립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 NPO 법인 제세특례 정책

인정 NPO 법인은 다음과 같은 세제상특례조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단체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

- 기부금에 대한 특례조치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모으기 쉬워진다.

☞ 제세상특례조치 1~3 참고

- 간주기부금에 관한 특례조치를 활용하면, 법인세가 경감된다.

☞ 제세상특례조치 4 참고

- 사회적 신뢰를 쌓을수 있고, 신뢰는 기부확대로 이어질수 있으며, 보조금 또는 조성금을 얻기 쉬워진다.
- 법령준수의식이 높아지며, 내부 관리가 적정하게 수립 및 시행할수있다.
- 정보공개의 의무가 강화됨으로, 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제세상특례조치 4 가지

1. 개인이 인정 또는 임시인정 NPO 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특례조치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액의 합계액에서 2 천엔을 제한 금액이, 기부금공제액이 됩니다.

기부자는 소득세의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 2,000엔) \times 50\%_{※} = 감세액$									
※ 소득세 40%, 개인 주민세 10%, 합계최대로 50%									
기부금 공제 방식 예 :									
<table border="1"> <tr> <td colspan="2">30대 회사원의 예 :</td> </tr> <tr> <td>年収</td> <td>420万円</td> </tr> <tr> <td>課税対象所得</td> <td>226万円</td> </tr> <tr> <td>所得稅率</td> <td>10%</td> </tr> </table>	30대 회사원의 예 :		年収	420万円	課税対象所得	226万円	所得稅率	10%	<p style="text-align: center;">최대 50%의 세액 공제 = 감세</p> <p style="text-align: center;">환급</p> <p style="text-align: center;">세액공제 24,000 엔 (소득공제 이면 9,300 엔)</p>
30대 회사원의 예 :									
年収	420万円								
課税対象所得	226万円								
所得稅率	10%								
<p>총 50,000엔을 기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인정NPO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임시인정NPO법인</div> </div>									
<p>확정 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액에는,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의 두가지방식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p>									

2. 법인이, 인정 또는 임시인정 NPO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특례조치

➡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비해, 손금산입 할수있는 기부금 한도액이 상승하였습니다.

특별손금산입한도액 : 일반 손금산입 한도액과는 별도로, 인정NPO법인만의 특별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을 인정.	
$(자본금 등의 액 \times 0.375 \% + 소득 금액 \times 6.25 \%) \times \frac{1}{2}$	
* 2011 년 11 월에 성립 된 세제개정법안에 의해, 인정 NPO 법인을위한 특별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상속인 등이 인정 NPO 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 등에 대한 특례조치

➡ 상속재산 기부에 있어서, 그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인증 NPO 법인 불가)

상속 혹은 유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인정 NPO 법인에 그 인정 NPO 법인이 시행 하는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기부를 한 경우, 그 기부를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부를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 또는 유산과 관계된 상속세의 과세기반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 억엔의 유산이있을 경우, 그 중 8,000 만엔을, 인정 NPO 법인에 기부하면, 상속세의 과세 대상 금액은 2,000 만원만입니다.

* 부동산 (토지 · 건물 등) 등일 경우에는, 위와 달리 기부자에 "간주양도소득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みなし譲渡所得課税」)

유증이나 상속재산 등의 기부는, 납세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4. 인정 NPO 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한 경우.

➔ "법인세 경감조치"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인증 NPO 법인 불가)

수익 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특정비영리활동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일정한 범위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과 수익 사업에 드는 법인세가 경감됩니다. 이것이 "간주기부금제도" 입니다.

* 간주기부금의 공제 한도는, 소득의 50% 또는 200만원 중 높은 쪽입니다. 소셜비즈니스에 임하는 사업형 NPO 법인에, 메리트가 있는 혜택입니다.

		간주 기부금 이란			
				NPO 법 (법인 제도)	
				구분하여 관할 기관에 회계보고 제출	
				A 특정 비영리 활동 에 관한 사업	
				B 기타 사업	
법인 세법	세 무 서 에 신 고	구 분 하 여	1 (과세대상) 수익사업	A-1	B-1
			2 (비과세) 비수익사업	A-2	B-2
				간주 기부금	



税務署長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分の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確定申告書A FA0111

第一表 (平成二十七年分以降用)

住所 (又は居所)	フリガナ	氏名
平成 年 1月 1日 の住所	性別 男 女	世帯主の氏名 世帯主との続柄
	生年月日	電話番号 自宅・勤務先・携帯

収入金額等		所得金額		所得から差し引かれる金額		税金の計算		その他	
給与	⑦	給与	①	社会保険料控除	⑥	課税される所得金額	⑤-②	②①	000
雑	⑧	雑	②	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	⑦	上の②に対する税額	②②		
公的年金等	⑨	配当	③	生命保険料控除	⑧	配当控除	②③		
その他	⑩	一時	④	地震保険料控除	⑨	(特定増改築等)区分	②④		
合計	⑪	合計	⑤	寡婦、寡夫控除	⑩	住宅購入金特別控除	②⑤		
				勤労学生、障害者控除	⑪	政党等寄附金等特別控除	②⑥		
				配偶者(特別)控除	⑫	住宅耐震改修特別控除	②⑦		
				扶養控除	⑬	住宅特定改修・認定住宅新築等特別税額控除	②⑧		
				基礎控除	⑭	差引所得税額	②⑨		
				⑥から⑭までの計	⑮	(②⑨-②⑩-②⑪)	③②		
				雑損控除	⑯	災害減免額	③③		
				医療費控除	⑰	所得引所得税額(基準所得税額)	③④		
				寄附金控除	⑱	復興特別所得税額	③⑤		
				合計	⑳	(③④×2.1%)	③⑥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③⑦		
						外国税額控除	③⑧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③⑨		00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④①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④②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④③		
						申告期限までに納付する金額	④④		00
						延納の届	④⑤		000
						延納の届	④⑥		000

寄付金 公制 入をお忘れなく。

銀行	本店・支店
金庫・組合	出張所
農協・漁協	本所・支所
郵便局	預金種類
名等	普通 当座 納付 貯蓄
口座番号	記号番号

(税理士印) 署名押印 電話番号

税理士法第30条の書面提出有 税理士法第33条の2の書面提出有

区分	A	B	C	D	E	F	G	H	I	J	K
整理欄											
管理											
納管											
事務											
住民											
検査											
通日付印											
年月日											
一連番号											

平成 年分の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確定申告書A
番号 FA0065

住所 _____
フリガナ _____

○ 所得の内訳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所得の種類	種目・所得の生ずる場所又は給与などの支払者の氏名・名称	収入金額 円	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源泉徴収税額 円

○ 雑所得(公的年金等以外)・配当所得・一時所得に関する事項

所得の種類	種目・所得の生ずる場所	収入金額 円	必要経費等 円

○ 住民税に関する事項

16 16歳未満の扶養親族の氏名	続柄	生年月日	別居の場合の住所
		平	
		平	
		平	

給与・公的年金等に係る所得以外(平成28年4月1日において65歳未満の方は給与所得以外)の所得に係る住民税の徴収方法の選択 給与から差引き 自分で納付

配当に関する住民税の非居住者の特例 適用 適用除外

寄附金税額控除 都道府県、市区町村分 寄附金の所在地の共同募金会、日赤支部分

別居の控除対象配偶者・控除対象扶養親族の氏名・住所 _____

○ 所得から差し引かれる金額に関する事項

⑥ 社会保険の種類	支払保険料 円	⑦ 掛金の種類	支払掛金 円
合計		合計	

⑧ 新生命保険料の計	円	旧生命保険料の計	円

⑨ 介護医療保険料の計	円	旧長期損害保険料の計	円

本人扶養控除 寡婦(寡夫)控除 勤労学生控除
 死別 生死不明 離婚 未婚 未帰還

⑫ 配偶者の氏名 _____ 生年月日 _____
 配偶者控除 配偶者特別控除

⑭ 控除対象扶養親族の氏名	続柄	生年月日	控除額 万円
		明・大 昭・平	
		明・大 昭・平	
		明・大 昭・平	

⑬ 扶養控除額の合計 _____ 万円

⑮ 損害の原因 _____ 損害年月日 _____ 損害を受けた資産の種類など _____

損 害 金 額	保険金などで補填される金額	差引損失額のうち災害関連支出の金額
円 _____	円 _____	円 _____

⑯ 寄附金の控除 寄附先の所在地・名称 _____ 寄附金 _____

○ 特例適用条文等 _____

第一表 (平成二十七年分以降適用) ○第二表は、第一表と二種と選択したくない場合は、二種と選択したくない。○源泉徴収票、国民年金保険料や生命保険料の支払証明書などを申告書に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は添付書類を添付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

寄付金 税額 控除額 寄付者の住所 明칭 寄付金額

第一表 (平成二十七年分以降用)

住所 <small>(又は事業所事務所等所在地)</small>	フリガナ
氏名	性別 職業 番号・番号 世帯主の氏名 世帯主との続柄
平成 年 月 日 1月1日現在の住所	生年月日 電話番号 自宅・勤務先・携帯

種別		青色申告	外国	出	損失	控除	特異	特異	番号	翌年	以降
収入金額等	事業等 ⑦										
	業 業 ①										
	不動産 ②										
	利子 ③										
	配当 ④										
	給与 ⑤										
	雑 公的年金等 ⑥										
	その他 ⑦										
	総合譲渡 短期 ⑧										
	長期 ⑨										
所得金額	事業等 ①										
	業 業 ②										
	不動産 ③										
	利子 ④										
	配当 ⑤										
	給与 ⑥										
	雑 ⑦										
	総合譲渡・一時 ⑧										
	合計 ⑨										
	所得から差し引かれる金額	雑損控除 ⑩									
医療費控除 ⑪											
社会保険料控除 ⑫											
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 ⑬											
生命保険料控除 ⑭											
地震保険料控除 ⑮											
寄附金控除 ⑯											
寡婦、寡夫控除 ⑰											
勤労学生、障害者控除 ⑱											
配偶者(特別)控除 ⑲											
扶養控除 ⑳											
基礎控除 ㉑											
合計 ㉒											

寄付金 公制額

※ 復興特別所得税額④欄の記入をお忘れなく。

税理士 署名 電話番号	〒	〒
税理士法第30条 の書面提出有	税理士法第33条 の2の書面提出有	

